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30.(월) / 총 3매(본문 2, 참고 1)
담당 부서	자동차보험팀	담당 자	· 팀장 윤종빈, 사무관 문수빈, 주무관 송혜주 · ☎ (044) 201 - 4760, 4861, 4872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사각지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

교통사고 피해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- 30일 국무회의서 교통사고 피해지원 범위 확대 골자 개정안 통과

- 20년부터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친·인척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지원 심사대상자에 포함하고,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(幼子女)에 대해 그간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장학금을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개편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지원이 보다 강화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30일(월)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종전에는 부모를 여윈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·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친·인척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유자녀 본인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,

-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, 지원필요성, 친·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편하였다.

□ 또한, 「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여 장학금도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개편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확대한다.

- 종전에는 학업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초·중·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그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%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,

-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요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.

※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(☎1544-0049)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otsa.or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문수빈 사무관(☎ 044-201-48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목적**

- 자동차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가족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고, 유자녀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**법적근거**

-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30조제2항

정부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,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다

-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: 자배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

□ **재원**

- 자동차소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%를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'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' 재원으로 활용

* (근거)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37조(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)

□ **지원대상 및 기준**

- (지원대상)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(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1급~4급)가 있는 경우로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(지원기준) 보조금, 지원금, 학업장려금 등에 따라 지원(월 또는 분기)

지 원 대 상	지 원 구 분	기 준 금 액
중증후유장애인	가. 재활보조금의 지급	월 20만원/인
	나. 학업장려금의 지급	분기 20~40만원/인
유 자 녀	가.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	월 20만원/인
	나. 학업장려금의 지급	분기 20~40만원/인
	다. 자립지원금* 지급	월 6만원 이내/인
피 부 양 가 족	피부양보조금의 지급	월 20만원/인

* 유자녀의 보호자가 학자금, 창업, 직업교육, 주택마련 등 목적으로 매달 10만원 범위 내에서 월 일정 금액 적립시 정부가 월 6만원 한도로 매칭 적립 지원